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55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1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8월 12일 조상호 의원의 13명
2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0년 9월 3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조상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의 직무로 명시하고자 함.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(’20.6.4.공포 시행)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로 스페이스살림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함.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을 대표의 직무에 규정하고,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「지방출자출연법」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종료 2개월로 앞당기려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여성가족재단 대표의 직무 규정 (안 제18조제1항)

- 개정안은 서울시 위탁 사무인 스페이스 살림(2020.9월 개관 예정)을 서울여성플라자와 동일하게¹⁾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에 ‘스페이스 살림’ 추가하여 규정하여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8조 (임원의 직무) ①대표이사는 <u>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</u>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 ② (생략)	제8조 (임원의 직무) ①----- -- <u>재단,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을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1) 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8.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
9.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

□ 결산서 제출 기한 변경 (안 제9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현행 여성가족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이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였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, 이는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²⁾를 반영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생략)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<u>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	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</u>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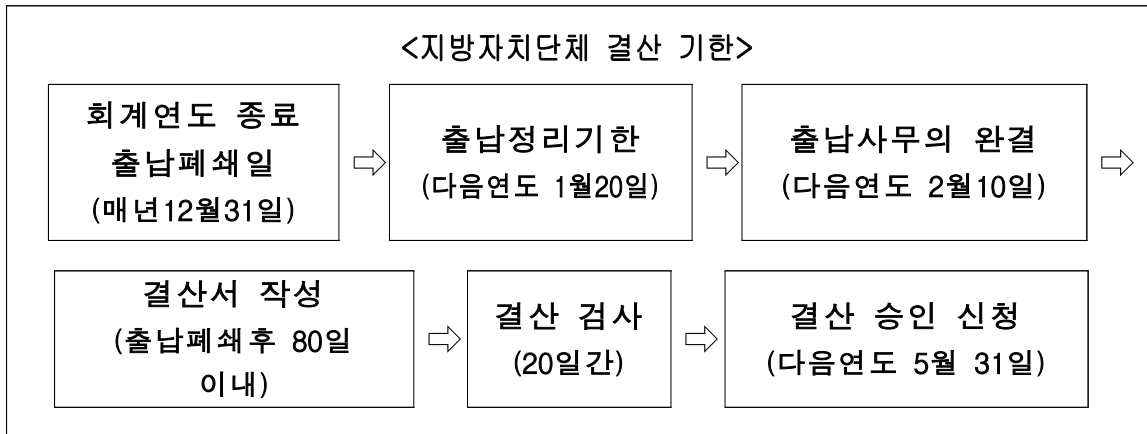
- 현재 「지방회계법」 제7조³⁾에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은 회계연도

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결산)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산총액, 부채규모, 종업원 수,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·출연 기관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부칙 제5조(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3) 「지방회계법」 제7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 1월 20일 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.

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, 출납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
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따라서 서울시의회의회의 결
 산 승인 신청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음.



- 이에 동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기존
 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의 결산 사무의 원활
 한 진행을 위해 타당하다할 것임.

1.~3. (생략)
 ② (생략)
 ③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·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
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‘스페이스 살림’을 여성가족재단의 고유사무로 운영함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에 이를 추가하여 규정하여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,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결산서 작성 기한을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결산 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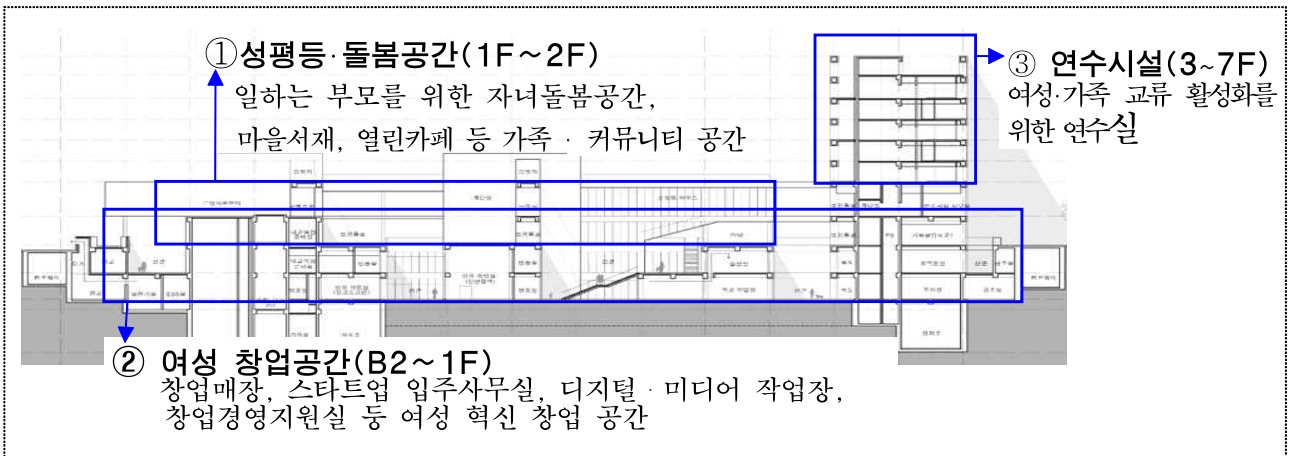
여성가족복합시설 '스페이스 살림' 조성개요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동작구 대방동 340-4번지 외 3필지
- 규 모 : 지상 7층, 지하 2층 (연면적 17,957㎡)
- 사업기간 : '15년 ~ '20년 9월
- 주요시설 : 여성창업공간, 성평등·돌봄공간, 열린공유공간
 - 창업공간, 자금, 장비 등 지원으로 '국내 최초 여성창업통합지원'시스템 구축
 - 시간제 보육, 초등 돌봄 제공,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
- 사업기간 : 2015년~2020년 9월
- 총사업비 : 1,151억원(토지 636억원, 공사비 462억원, 설계·감리비 등 53억원)

□ 층별 시설내역

구분	층별 용도
3층~7층	연수시설(3~7층) 야외공연장(3층), 옥상텃밭(3층)
2층	창업자 입주공간, 마을서재(2층), 열린카페(2층), 교육장 우리동네키움센터(상담실), 식당, 몸마음돌봄공간
1층	창업매장(편집매장, 소름), 공유사무실, 우리동네키움센터, 영유아 시간제 보육시설, 마을서재(1층), 열린카페(1층) 옥외 : 야외놀이터
B1층	창업자 입주공간(매장, 사무실), 다목적홀, 주차장
B2층	창업자 입주공간(매장, 사무실), 녹음/편집촬영실, 메이커스페이스, 세미나실, 주차장 등

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발 의 자 : 조상호, 김생환, 이영실,

김경영, 권영희, 김경우,

최 선, 임만균, 송아량,

이은주, 이승미, 박기재,

전병주, 양민규 의원 (14명)

1. 제안이유

-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‘스페이스 살림’ 업무를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의 직무로 명시하고자 함.
- 또한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개정(’20.6.4. 공포 시행)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로 스페이스살림을 규정함 (안 제8조)

나. 재단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이내로 규정함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를”을 “재단,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을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”을 “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 (임원의 직무) ①대표이사 는 <u>재단 및 서울여성플라자</u>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생 략)</p> <p>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<u>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</u>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	<p>제8조 (임원의 직무) ①----- -- <u>재단,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 페이스 살림</u>을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 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</u> 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